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15

발의연월일 : 2020. 11. 20.

발 의 자:이종성・임이자・김형동

김성원 · 정희용 · 권명호

권성동 • 이태규 • 김태호

정운천 · 윤창현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실정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이 없어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원장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이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

집이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 정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제42조의2제1항제4호의2, 제44조제4호의9 및 제49조의3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어린이집 위생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3조의3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44조에 제4호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9. 제33조의3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49조의3제1항제2호 중 "운영기준 및 제33조에"를 "운영기준, 제33조 및 제33조의3에"로, "급식기준을"을 "급식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3조의3(어린이집 위생관리) 어
	린이집의 원장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
	<u>다.</u>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	신고자 보호)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 <신 설></u>	<u>4의2. 제33조의3에 따른 어린이</u>
	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 6. (생략)	5.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	
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 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 경을 명할 수 있다.

1. ~ 4의8. (생 략) <u><신</u> 설>

5. ~ 8. (생략)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 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 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 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 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 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다른 어린이집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 만, 제1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공표하여야 한

<u>.</u>
1. ~ 4의8. (현행과 같음)
4의9. 제33조의3에 따른 어린이
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u>경우</u>
5. ~ 8. (현행과 같음)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
<u>.</u>

다.

- 1. (생략)
- 2.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 및 2. -----운영기준, 제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 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 해가 발생한 경우
- ② ~ ④ (생 략)

1.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u>33조 및 제33조의3에</u>----------급식기준 및 위생관 리기준을-----
- ② ~ ④ (현행과 같음)